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 감사 기간 : '14. 4. 9. ~ 4. 25. (13일간)
- 감사 범위 : '11. 10. 8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지적 내용 (2건)

① 청소용역계약 계약체결방법 부적정 <주의>

<지적내용>

- 부산교통공사의 '12년부터 ~'13년까지 체결한 청소용역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수년에 걸쳐 동일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계약범위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 체결계약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를 법적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나,
- 해당 호¹⁾는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장애인 복지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설,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로,
- 부산교통공사가 사유로 제시한 사업수행실적 우수, 고용불안해소는 청소용역 계약의 목적·성질상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특정업체만 한정하여 지속적으로 계약체결함으로써 계약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처분요구>

- 부산교통공사사장께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1) 2013. 11. 20. 이전 시행령

※ 2013. 11. 20.부터 시행된 시행령 부터는 별도 호(7의2)로 개정('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구 삭제)

② 부산교통공사 인수채무 관리 부적정 <시정>

<지적내용>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제4조('05. 7.13. 폐지), 「지하철 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 합의문」('04. 9. 8, 부산광역시·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및 「부산교통공단의 채무 인수 및 관리를 위한 정부와 부산광역시간 실행 합의서」('05.12.30, 부산광역시·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에 의하면, 구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업무는 부산광역시가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06. 1. 1.부터 부산광역시가 구 부산교통공단의 채무 6,534억원* 인수).
- 또한, 부산광역시는 위 실행 합의서에 따라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을(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원) 투입하여 매년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그러나, 부산광역시는(예산담당관실, 현 재정관리담당관실) 2011. 5.16. 부터 2011. 6.24.까지 실시된 감사원 “지방재정 건전성 특별감사결과” 구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현 부산교통공사) 인수한 채무 6,563억원을 결산보고서와 재무보고서에 부채로 반영하여 재정운용 상황을 사실대로 관리·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결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유로 2011.12.23. “주의” 처분요구를 받은 바 있다.
- 이 후, 2011.12.2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가 작성한 2012 및 2013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24-2. 부산교통공사 인수채무), “2006년부터 부산교통공사에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채무금액 6,563억원을 초과한 1조 5,160억원을 부산광역시 자체 재원으로 이미 지원한 상태다.” 라는 이유로 재무보고서상 확정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부산광역시는 시 재정 여건상 인수부채 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06. 1. 1. 이후 현재까지 원금 상환액은 211억원에 불과하고 (상환율 3%, 정부는 '13년까지 상환완료), 교통공사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매년 320억원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더욱이, 2012.12.10. 부산광역시가 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교통공사 공사채(차환) 발행 신청에 따른 부산시 교통공사 인수부채 원금상환계획”에 의하면, “교통공사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인력·조직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경영진단 용역 분석 후 운영 경비 절감 등을 통해 인수부채 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없다.
- 결국, 부산광역시는 시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매년 발생하는 인수부채 이자 및 지하철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 재원을 통해 해결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총부채에 (8,833억원) 부산광역시가 부담해야 할 인수부채 6,563억원을 포함하여 관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정확한 재정운영 상황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처분요구>

- 부산광역시장께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고,
- 부산교통공사 인수부채를 부산광역시 부채로 인식하는 한편, 원금상환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